

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847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3. 제출일자 : 2025년 5월 26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II 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III . 주요내용

- 2024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액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예정인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으로 인한 변경

<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 >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항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합계	294,420	377,488	83,068	합계	294,420	377,488	83,068
기금 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164,750	164,750	-	기금 융자금	200,000	200,000	-
				시중은행협력자금 이자보전금	86,200	86,900	700
공공예금 이자수입	3,790	3,790	-	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301	301	-
				기금업무대행 수수료	1,200	1,200	-
예치금 회수	85,880	158,248	72,368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	0	10,000	10,000
			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	2,420	2,420	-
기타(일반)회계 전입금	40,000	50,700	10,700	예치금	4,294	76,662	72,368
				기본경비	5	5	-

< 2025년 융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>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	비고
합계	294,420	377,488	83,068	
중소기업 금융지원	287,701	288,401	700 (0.24%)	
중소기업 직접융자	200,000	200,000	-	
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	86,200	86,900	700	· 2025 추가경정예산안 반영
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301	301	-	
기금 업무대행 수수료	1,200	1,200	-	
행정운영경비	5	5	-	
기본경비(기금)	5	5	-	
재무활동	6,714	89,082	82,368 (1226.8%)	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	2,420	12,420	10,000	
예수금원금상환	-	10,000	10,000	· 2025 추가경정예산안 반영
예수금이자상환	2,420	2,420	-	
예치금	4,294	76,662	72,368	· 202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반영

IV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변경안의 개요

- 동 변경안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및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의 반영으로 지출계획에서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운용계획 대비 20%를 초과하여 변경되었기에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¹⁾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조성 및 운용 현황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용자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에 설치되었으며, 2018년부터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·운용하고, 2023년에는 사회투자기금을 통합하여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함.

<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 분류 >

계 정	용 도 ²⁾	소 관 부 서
용 자 계 정	·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용자 · 금융기관의 저금리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· 기금 차입금·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·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·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	민 생 노 동 국 소 상 공 인 정 책 과
투 자 계 정	· 창업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	경 제 실 창 업 정 책 과
사회적경제 계 정	·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· 사회,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	민 생 노 동 국 공 정 경 제 과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~2.(생략)

-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(이하 “용자계정”)의 기금총액은 6,398억 3천 6백만원이며, 일반회계 전입금 1조 84억 3천 5백만원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,200억원, 운용손실 5,885억 9천 9백만원으로 구성됨.

< 용자계정 총 조성 규모 >

(2025. 4월말 기준, 단위: 백만원)

기금총액	일반회계 전입금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	기금운용손익
639,836 (100%)	1,008,435 (157.61%)	220,000 (34.38%)	-588,599 (-91.99%)

- 또한 직접용자와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2025년 운용규모는 총 1조 9천억원으로, 4월말까지 건수 약 2만 1천건, 금액 8,555억원을 지원함(추천율 45.0%).

<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실적 >

(2025. 4월말 기준, 단위 : 건, 억원)

구 분	계 획 (A)	용자추천			용자(대출)실행		
		건수	추천금액 (B)	추천율 (B/A)	건수	실행금액 (C)	실행률 (C/A)
합 계	19,000	21,575	8,555	45.0%	19,410	7,661	40.3%
중소기업육성기금	2,000	4,754	1,742	87.1%	4,330	1,549	77.5%
시설자금	200	8	55	27.5%	4	26	13.2%
경영안정자금	1,800	4,746	1,687	93.7%	4,326	1,523	84.6%
성장기반자금	800	1,583	751	93.8%	1,291	618	77.3%
긴급자영업자금	850	3,056	844	99.4%	2,929	813	95.7%
혁신형기업도약자금	50	77	50	99.2%	77	50	99.2%
재해중소기업자금	100	30	42	42.4%	29	42	41.7%
시중은행협력자금 (경영안정자금)	17,000	16,821	6,813	40.1%	15,080	6,112	35.9%
일반자금	10,200	11,093	4,061	39.8%	10,029	3,673	36.0%
경제활성화자금	8,000	7,751	3,286	41.1%	6,895	2,944	36.8%
포용금융자금	500	81	16	3.2%	68	14	2.8%
창업기업자금	1,000	1,422	342	34.1%	1,272	309	30.9%

2)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(기금의 용도)

신속드림자금	700	1,839	417	59.6%	1,794	406	58.0%
특별자금	6,800	5,728	2,752	40.5%	5,051	2,439	35.9%
비상경제회복자금	2,000	657	221	11.0%	544	182	9.1%
희망동행자금	2,300	2,665	745	32.4%	2,322	648	28.2%
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	2,250	2,327	1,756	78.1%	2,118	1,583	70.3%
ESG자금	100	79	30	29.9%	67	26	25.6%
재기지원자금	150	-	-	-	-	-	-

-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존 융자지원 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수출 기업경영안정자금(1,000억원), 서울배달상생자금(200억원)³⁾, 안심통장(4,000억원)⁴⁾ 등 신규 자금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를 통해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도모할 계획임.

3.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

- 수입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723억 6천 8백만원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7억원을 반영하여 총 830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함.
- 지출은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7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100억원, 예치금 723억 6천 8백만원을 증액함.

3) 배달앱 ‘뽕겨요’를 사용하는 ‘서울배달 상생 기업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2%의 이차차액을 보전할 예정임. 또한 2025년도 약 1.3억원의 이차보전금이 소요될 예정이나 기편성 예산의 잔액으로 추진이 가능함.

4) 안심자금은 민간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의 85%를 보증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직접 지원되지 않으나,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편입하여 관리할 계획임.

<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내용 >

(단위 : 백만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	
항 목	당초	변경	증감	항 목	당초	변경	증감	
합 계	294,420	377,488	83,068	합 계	294,420	377,488	83,068	
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164,750	164,750	-	사 업 비	기금융자금	200,000	200,000	-
					시중은행협력자금 이자보전금	86,200	86,900	700
공공예금 이자수입	3,790	3,790	-		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301	301	-
					기금업무대행 수수료	1,200	1,200	-
예치금회수	85,880	158,248	72,368		재 무 회 계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	0	10,000
			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		2,420	2,420	-
기타(일반)회계 전입금	40,000	50,700	10,700	예치금		4,294	76,662	72,368
				기금관리비		5	5	-

- 먼저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7억원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1,000억원의 이차차액 2%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됨.

<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세부내용 >

<p>▶지원대상 :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행 수출실적 증명서 확인 - 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(KTNET) 발행 수출실적 증명서* 확인 <p>*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</p> <p>▶지원한도 : 업체당 5억원 이내</p> <p>▶이자보전 : 2.0%</p> <p>▶상환조건 : 1년거치 4년 균분상환, 2년거치 3년 균분상환</p>

- 동 사업은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, 특히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 정부 차원에서 유사 조건의 융자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, 사업 실적이 예측보다 저조할 수 있으므로 수요자 맞춤형 홍보 강화, 타 정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< 정부 관세 피해기업 지원 내용 >

(단위: 조원)

구 분		공급규모 (조원)	지원내용
합 계		25.4	
대출	수출입은행	10.0	·수출기업 위기극복 지원 패키지 10조원
	산업은행	4.0	·관세피해 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4조원
	중소기업진흥공단	0.7	·한시 긴급지원자금 0.1, 신시장진출자금 등 0.6조원
보증 보험	신용·기술보증기금	4.5	·위기기업 특례보증 (신보 3.3, 기보 1.2조원)
	무역보험공사	5.7	·수출애로기업 특례보증 및 보험 2.4조원 ·중소 조선사 선수금보증 0.3조원, 방산 수출지원 3조원
펀드	자산관리공사	0.5	·관세피해 업종 기업구조혁신펀드 0.5조원

-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용자받은 잔액 2,200억원 중 원금 100억원을 상환하는 것임.

< 최근 5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상환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상환잔액	238,000	240,000	240,000	230,000	220,000
원금상환	-	-	-	10,000	10,000
이자상환 ⁵⁾	2,398	2,628	2,040	2,640	2,537

- 용자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의 상호약정에 따라 2033년 말까지 용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연도별 상환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등 상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용자계정의 지속성·안정성을 확보해야 함.

5)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(1.1%) 상환액

4.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.
- 동 변경안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액분(723억 6천 8백만원) 및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(107억원)을 각각 이차보전금,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, 예치금으로 지출하는 것임.
- 그 결과 기금의 지출계획에서 재무활동이 당초 대비 1226.8%가 증가하게 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, 변경안의 목적과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.

< 정책사업 단위별 증감 내역 >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	당 초	변 경	증 감	증감율(%)
합 계	294,420	377,488	83,068	28.2
사업비	287,701	288,401	700	0.24
재무활동	6,714	89,082	82,368	1226.8
행정운영경비	5	5	-	-

입법조사관	연락처
김혜진	02-2180-8057